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의결사항

대 한 적 십 자 사 조 직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8년 1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19. ~ 6.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1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 1천만원 ----------.
제29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9조(과태료) ① ---------- 500만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연 락 처	(044) 202 - 2532